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6. 9. 29.>

사기이용계좌등·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

피해자산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)이 입금·이전된 계좌등	금융회사등		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
	명의인	입금·이전일시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
피해자산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)이 입금·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	금융회사등		입금·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
	명의인	입금·이전일시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
피해자산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)이 출금·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	금융회사등		출금·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
	명의인	출금·이전일시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

특이사항(구체적으로 적습니다)

그 밖의 사항	담당자 성명	직위	연락처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전자금융업자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**금융회사등**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·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 1부